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 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촉)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①도지사는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금조성)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일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발전을 위한 운영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5조(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①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년도 과징금 운용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

③운영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운영기금에 편입한다.

제6조(수익성이 없는 노선)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대체교통수단이 없고,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노선중에서 이용승객이 적어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제1항의 노선선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준상의 평균승차인원 범위내에서 운송결손 정도와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도지가가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정한다.

제7조(운행결손 보상 등)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결손액 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제2항(벽지노선 손실보상)의 규정을 준용하되,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출·청구조정보상 및 제외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